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1
----------	-----

발의연월일 : 2024. 10. 10.

발의자 : 정현미, 이진환, 전해연,
박경원, 한근수, 원주영,
박윤옥, 박은경, 김동훈,
이경숙, 김지훈(민)

1. 제안 이유

남양주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다. 토론회 등의 신청·승인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제5조)
- 라. 토론회 등의 진행 및 결과의 반영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및 실비보상을 규정(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
·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남양주시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등의 각종 의견청
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
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진행 등을 지원·관리한다.

②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직 위 :
	소 속 :	연락처 :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주요내용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결과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보고합니다.

행사명	
일시/장소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토 론 진 행 사 항	
그 밖의 사항	
비 고	개최 사진 등 관련 자료 붙임

년 월 일

주최자 : (인)

남양주시의회 의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토론회 운영 시 지급되는 활동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은 없음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윤선기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